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권

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8 호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복리후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유족보상) 제1항 중 “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,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” 를 “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하여 보상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유족보상)</p> <p>① 임직원이 <u>업무상 사망한 경우</u>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<u>평균임금의 1,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3조(유족보상)</p> <p>① 임직원이 <u>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하여 보상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

제62조(유족급여)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.

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,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제71조(장례비)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,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.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[별표 3]

유족급여(제62조제2항 관련)

유족급여의 종류	유족급여의 금액
유족보상연금	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(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)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.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. 다만,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유족보상일시금	평균임금의 1,300일분